

##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

학생회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5조제2항을 2항의 본문에서 '다음 각 호의 직을'을 '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장의 직을'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, 집행기구
- 2, 자치기구
- 3, 감사원을 제외한 전문기구
- 4, 특별기구

제125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,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
- 6, 그 밖에 학생회칙에 따라 설치된 모든 단체